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수행기관 모집 공고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 에너지밸리 기반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과 청년 지역정착을 연계한 직(職)·주(住)·락(樂)·비(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 ☐ (사업명)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 ☐ (공모과제) 1개
- ☐ (공모형태) 자유공모
- ☐ (지원대상 및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기업지원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관(지역기업, 연구소, 관련기관 등)
- ☐ (지원형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 (지원기간) 2026. 6. 24. ~ 2030. 12. 31.(총 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 2026. 6. 24. ~ 2027. 2. 28.
 - * 연차평가 결과, 예산확보 및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계속지원 여부는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예산) 10,000백만원이내
 - * 연차별 사업비는 2,000백만원이며, 전담기관 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 수행기관 지원예산은 연차별 협약 체결 시 조정·확정될 수 있음

1-3.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에너지·ICT 융합 분야 청년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스타트업 전주기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 창업기업 대상 성장단계 진단 및 후속지원 연계
-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관리 및 성장지원

② 직·주·락·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지원대상: 청년(만 45세 이하) 예비스타트업, 스타트업(설립 후 7년 이내)
- 지원분야: 에너지·ICT 융합 분야
- 지원내용: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사업모델(BM) 개선, 마케팅 및 임직원 정주개선 등 지원
- 사업비: 지원금 기업당 차등 지급

<표 1> 프로그램 운영(안)

구분	주요 프로그램(안)	주요내용
에너지 플러스	· 창업희망자 발굴·관리, 거점공간 조성, 공공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청년 창업희망자 발굴 및 단계별 관리, 창업공간 조성, 에너지 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직(職)	· 창업 발굴·육성, 인턴십·취업연계, 교육·실험실 창업 지원, R&D·사업화 연계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인턴십 및 취업연계, 실험실 창업 지원, R&D 매칭·기술사업화·투자연계 지원
주(住)	· 주거비 지원, 지역정착 지원, 교통비 지원	· 창업기업 임직원 및 참여청년의 주거 안정, 장기 정착,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주여건 지원
락(樂)	· 문화여가 지원, 지역소통 네트워크, 자율문화 네트워크 지원	· 참여청년 및 스타트업 임직원의 문화여가 활동 지원,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도 자율문화 네트워크 지원
비(備)	· 초기자금 지원, 희망통장·디딤돌통장 연계	· 창업 초기비용 부담 완화 및 청년·스타트업 임직원의 자산형성 지원

※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항목은 평가 및 협약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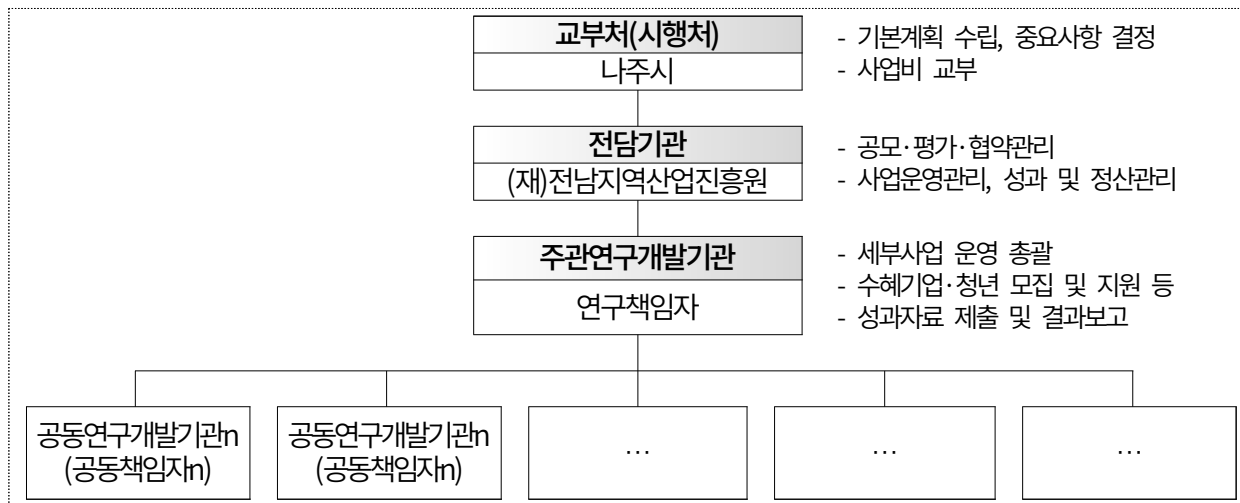
2-1. 추진체계

- ☐ 시행처(교부처) : 나주시
- ☐ 전담기관 :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
- ☐ 수행기관 :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1개 기관으로, 협약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표 2> 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시행처(교부처)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중요사항 결정
전담기관	공모·평가·협약·성과관리·정산·사후관리
수행기관	세부사업 운영, 수혜자 모집·지원, 성과자료 제출

☐ 추진체계도



<그림 1> 사업 추진체계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본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 기관(지역기업, 연구소, 관련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과제 전체를 관리 하는 연구자
- “공동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

2-2.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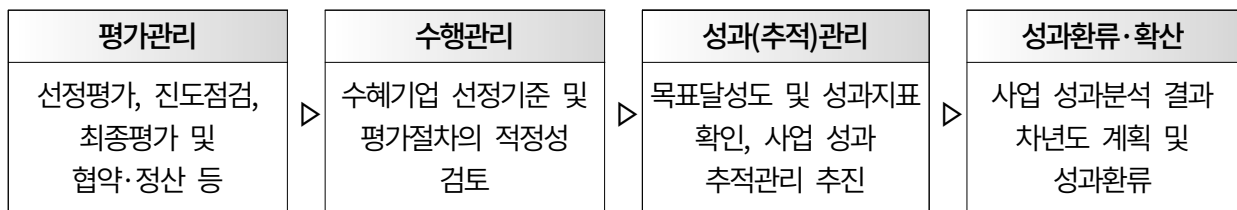
□ 수행기관

사업수행 : ①사업기획 → ②모집·선정 → ③프로그램 운영 → ④성과점검·추적

- ① **사업기획**: 수행기관은 공고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② **모집·선정**: 수행기관은 수혜기업 모집·접수, 사전검토, 기업지원 및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수혜기업 선정기준, 평가절차,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결과 확정 등 주요 절차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 ③ **프로그램 운영**: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유사·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수혜이력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
- ④ **성과추적**: 수행기관은 지원대상의 성과관리와 사후 추적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혜자·수혜기업별 정착성과 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여야 함. 또한 청년 정착 유지율, 사업장 유지율, 고용 유지율, 후속지원 연계율 등 정착성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전담기관

사업관리 : 평가관리 → 수행관리 → 성과(추적)관리 → 성과환류·확산



<그림 2> 사업관리 추진절차

□ 시행처(교부처)

- 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요사항 결정
- 사업비 교부 및 연차별 예산 조정·확정
- 성과분석 결과 검토 및 차년도 사업방향 의견 제시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준 준용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지역요령」 제2조제1항제10호의6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4. 평가절차 및 방법

4-1. 평가절차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 나주시,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RIIA)	7.20.~29.
사전검토	-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RIIA)	~7.30.
선정평가	-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RIIA)	~7.31.
이의신청	-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RIIA)	~8월 초
수행기관 선정·확정	- 나주시,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RIIA)	~8월 초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월 중

<그림 3> 평가 절차도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 및 참여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 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 자격검토
- ☐ **선정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 **이의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통보 후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없음’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4-2. 평가방법

- ☐ 선정 기준: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수행 및 관리능력 등 4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표 5> 평가선정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20)	사업 목표, 수행내용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10
	지원 내용 및 방법 설정시 수요 반영도	10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30)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성과지표 달성 가능성	10
	지원 효과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및 관리 능력(35)	각 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15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및 일정의 적절성	10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의 적정성·전문성	10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15)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 (수혜자·수혜기업별 정착성과 관리카드 운영계획, 성과관리 체계 등)	10
	사후 추적관리 계획의 적정성	5

- ☐ 평가방법: 서류 + 발표평가(운영형태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5인 이상
 - 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뺀 합산 평균점수
 - 평가 결과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70점 미만 지원제외
 -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분야 등 내용이 추가 조정될 수 있음
- ※ 위원회 구성(인원) 및 평가점수 산출 기준은 평가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준용

-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됨

5. 연구개발비

- ☐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보조금)는 행정안전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관리 및 집행함
- ☐ 연구개발비는 지원연구개발비(도비·시비)로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나주시	700	700	700	700	700	3,500
전라남도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 전담기관 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 산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산정

6.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6-1. 관련 규정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6-2.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기업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신청기관은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연구 개발과제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적용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확인·관리하여야 함
-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 조정이 가능함
- ☐ 전담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 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 지연, 중단 또는 협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공고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미응모 시 접수기간 연장을 위한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혜자·수혜기업별 지원이력, 정착현황 및 성과자료 관리를 위해 정착성과 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성과관리, 사후 관리 및 정착성과 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 에너지 분야 창업경연대회 등 유관 창업발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우수팀 (해당자)에 대해서는 나주시 및 전담기관 협의를 거쳐 차년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여부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선정절차에 따름

7. 신청방법 및 서류

7-1.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7. 20.(월) ~ 2026. 7. 29.(수) 18:00까지
접수서식	○ 서식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RIIA) 홈페이지(jn.riia.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절차	① 사업접수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접수처: eunji.park@riia.or.kr) 제출 - 신청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② 최종확인 : 신청기업은 이메일로 하기 접수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일 기준 1일 이내(공휴일 제외) 담당자가 발급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접수증 미수령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③ 접수완료 :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메일 접수증송부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이메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② 작성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필수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④ 신청계획서 내 책임자의 E-mail 및 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입력된 정확히 작성 ※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⑤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2. 제출서류

□ 제출파일명은 “**사업명_기관명_서류명**”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필수

- 나주형청년에너지창업사관학교_○○대학교_신청사업계획서.hwp

번호	조건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1	필수	신청 사업계획서 ※ 정착성과 관리방향, 수혜자·수혜기업별 정착성과 관리카드 운영계획 및 성과자료 관리·제출계획 포함	HWP	단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2	필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요시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3	필수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6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7	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약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8	해당시	감점 사항 확인서	PDF	서식참고
9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10	필수	법인등기부 등본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11	필수	최근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비영리기관의 경우 제출 면제이며, 최근 3개년 결산 국세청 발급본 원칙으로 함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